

「KB가맹금예치제도」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가맹본부"라 함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2. "가맹점 사업자"라 함은 "가맹본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금예치금" (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와의 약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가맹금을 말한다.
 - 4. "가맹금예치금 지급"이라 함은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을 "가맹본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급보류"라 함은 "가맹점 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을 제소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 앞 지급을 중단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6. "가맹금예치금 반환"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은행"에 예치된 가맹금을 "가맹점 사 업자"에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 7. "이용자"라 함은 "가맹금예치제도"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3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 ② 본 계약서에 정의된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계약 및 추가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맹금예치제도의 개념)

- ①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에 약정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합의에 따른 권리자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은행"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예치금"의 수령 및 보관
 - 2. 이용자가 등록한 예치금 정보에 따른 가맹금의 관리 및 지급 또는 반환
 - 3. 이용자의 정보 관리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가입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 4. "예치금"의 처리내역 및 현황 정보제공
 - 5. 기타『가맹금예치제도』이용에 필요한 부대 서비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금예치제도 이용)

- ①『가맹금예치제도』는 아래 각호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 1. "가맹본부": "은행"인터넷뱅킹 가입 및『가맹금예치제도』이용신청자
 - 2. "가맹점사업자": "은행"인터넷뱅킹 가입자
- ② 『가맹금예치제도』이용신청 및 이용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금의 "지급승인", "지급보류", "반환승인"등 "예 치금"에 처리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가맹금예치제도』가 원할 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금예치금의 이자 및 수수료)

- ① "은행"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은행"이 "예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금액은 "예치금"예치시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창구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은행"은 수수료 변경시 약관의 개정 및 효력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가맹금예치금 예치)

- ① "가맹점사업자"는 "은행"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
- ② "예치금"예치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은행의 취급오류사유로 예치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가맹금예치금의 지급)

- ① "예치금"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신고한 계좌로 자동지급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영업개시후 "예치금" 지급승인을 한 경우 지급승인일 익영업일
 -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금"예치시 등록한 가맹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제9조에 따른 지급보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익영업일
- ② "예치금지급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제8조(가맹금예치금의 반환)

- ① "가맹본부"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반환승인"을 하면 반환등록일 익영업일에 "가 맹점사업자"가 "은행"에 신고한 계좌로 "예치금"을 자동반환한다.
- ② "예치금반환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제9조(가맹금예치금의 지급보류)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소, 알선신청, 조정신청, 중재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완료한 경우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지급보류"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급이 보



류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금지급보류"해제한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다.
- ③ "예치금지급보류 등록 / 해제"에 관한 분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점을 통한 가맹금예치금 지급 / 반환)

- ① "은행"은 "가맹본부"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의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에 따라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중개기관 등을 통해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지 않더라도 결정문에 따라 "예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다.

제11조(정보관리)

- ① "은행"은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맹본부명, 프랜차이즈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상호 등)를 『가맹금예치 제』업무처리를 위하여"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상호간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 및"가맹점사업자"는 은행에 신고한 본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신청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정지 및 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 또는"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예치제도』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전화 또는 전자 우편(e-mail) 주소 등으로 통지 한다.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입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 제4조제3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가맹금 예치제 서비스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한 경우
 - 3. "은행"이나 타인의 권리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하는 경우
 - 4. 기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관계법령 및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인터넷뱅킹거래의 책임)

"예치금" 예치, 지급승인, 반환승인, 지급보류 등록/해제는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명의인에게 귀속한다.

제14조(가맹금예치금제도 이용내역 조회)

"은행"은 "가맹금예치제도"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치금"예치내역 등 『가맹금예치제도』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이용시간)

① 『가맹금예치제도』는 "은행"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영업시간,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는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또는 관련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이용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은행"은 동 내용을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중단)

"은행"은 컴퓨터 등 관련 시스템의 보수 점검 및 교체, 장애,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 (약관의 개정 및 효력)

- ① "은행"은 『가맹금예치제도』에 대한 새로운 업무의 적용, 정부 및 감독당국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은행"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약관을 변경 할 수 있다.
-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약관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정한 지급 또는 반환이 완료된 후 해지 가능하다.
- ④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제3항의 내용을 함께 통지한다.

제18조(은행의 면책)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이용자" 간 계약상 하자 및 불이행 등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 2. "은행"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보 및 각종 접근 수단의 외부 유출 등 "이용자"의 관리상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이용자"간의 손해

제19조(약관외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등 관계법령, "은행"의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일반관례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